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56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02 . . .
제출자 : 안산시장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제4조 규정에 의거 2002년 8월 17일자로 구 설치에 대한 기구·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안산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용을 도모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편제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(안 제5조).
- 나. 행정지원국에 총무과, 주민자치과, 회계과, 세정과, 정보통신과를 편제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(안 제7조).
- 다.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지역경제과, 농어촌진흥과, 첨단산업과를 편제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(안 제8조).
- 라. 복지환경국에 사회여성과, 문화체육과, 환경위생과, 공원녹지과를 편제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(안 제9조).
- 마. 도시건설국에 도시과, 건설과, 건축과, 허가과, 교통행정과를 편제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함(안 제10조).
- 바.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함(안 제20조).

□ 개정조례안 : 별첨

□ 관계법령발췌서

○ 지방자치법 제102조

○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

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□ 사전예고 : 해당없음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경기도 기획 12200 - 11766('2002. 8. 20)호 공문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산 시 행 정 기 구 설 치 조 례

제 1 장 총 칙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02조 내지 제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 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)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직속기관 : 보건소, 대부보건지소, 대부남동보건진료소
2. 사업소 : 상수도사업소, 환경사업소, 기업지원센터, 관산도서관, 차량등록사업소,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, 여성복지회관,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,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지원사업소, 농업기술보급소
3. 출장소 : 대부출장소
4. 하부행정기관 : 상록구, 단원구, 일동, 사1동, 사2동, 본오1동, 본오2동, 본오3동, 부곡동, 월피동, 성포동, 반월동, 안산동, 와동, 고잔1동, 고잔2동, 원곡본동, 원곡1동, 원곡2동, 초지동, 선부1동, 선부2동, 선부3동, 대부동

제3조 (국장 및 담당관·과장의 직급등) ① 시 본청 국장의 직급,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, 출장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실·과·소장의 사무분장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및 사업소장, 출장소장의 직급,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과 동장의 직급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 (소재지) 시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.

제 2 장 시 본 청

- 제5조 (부시장) ①시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밑에 부시장을 둔다.
②부시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통할하며, 시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③부시장 직속으로 공보담당관, 감사담당관을 둔다.
- 제6조 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, 기획경제국, 복지환경국, 도시건설국을 둔다.
- 제7조 (행정지원국에 두는 과) ①행정지원국에 총무과, 주민자치과, 회계과, 세정과, 정보통신과를 둔다.
②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문서, 공인, 복무, 의전
 2. 조직관리, 공무원인사, 공무원교육훈련업무에 관한 사항
 3. 민방위 조직관리 및 교육·훈련, 직소민원에 관한 사항
 4. 동행정의 지도·감독,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관련업무
 5.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
 6. 지역상황·여론관리에 관한 사항
 7. 민원행정, 민간협력 및 학교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
 8. 지출, 계약, 국·공유 재산관리,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
 9. 지방세정에 관한 사항
 10. 행정전산화추진 및 전산개발·유지관리
 11. 정보통신망 구축 및 통계정보 자료조사, 관리
- 제8조 (기획경제국에 두는 과) ①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, 지역경제과, 농어촌진흥과, 첨단산업과를 둔다.
②기획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1.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
 2. 의회관련업무
 3. 예산편성 및 중기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

4. 주요사업투자 심사·분석 및 경영사업 추진
5. 조례·규칙의 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
6.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
7. 물가안정 및 소비자 보호
8. 에너지수급 및 안전대책
9. 전문건설업종 난방시공업, 가스시공업,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및 관리
10.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
11. 농업기반조성 및 공유수면 관리
12. 농·수·축산 진흥 및 유통에 관한 사항
13. 통상협력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
14. 첨단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

제9조 (복지환경국에 두는 과) ①복지환경국에 사회여성과, 문화체육과, 환경위생과, 공원녹지과를 둔다.

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
2. 장애인복지·노인복지·여성·아동복지에 관한 사항
3. 청소년 시책추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
4.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
5.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, 문화시설물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사항
6.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사항
8. 공중·식품위생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
9. 매장·묘지에 관한 사항
10. 공원·녹지관리에 관한 사항
11. 조경시설 및 양묘사업 추진

제10조 (도시건설국에 두는 과) ①도시건설국에 도시과, 건설과, 건축과, 허가과, 교통행정과를 둔다.

②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국토이용계획, 산업입지 및 도시개발 관련에 관한 사항
2.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,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
3. 토지구획정리 사업, 지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

4. 개발제한구역 관리
5. 지적에 관한 사항
6. 도로사업의 종합계획수립, 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
7. 도로사업에 따른 토지매수 및 지장물 보상에 관한 사항
9. 전문건설업(난방시공업, 가스시공업,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제외)
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
10. 지하시설물 조사·탐사 및 DB구축에 관한 사항
11.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
12. 옥외광고물 관련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13. 건축물 건축허가 및 지도·단속에 관한 사항
14.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공사(토목, 건축)설계 및 시공감독
15. 기술심사에 관한 사항
16. 각종 인·허가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
17. 교통행정전반에 관한 사항
18. 자동차운수업·관리업 인·허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

제 3 장 직속기관

제11조 (보건소의 설치) ①법 제104조제1항의 규정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둔다.
②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.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·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.

제12조 (소장등)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,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.

②보건소장은 시장,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3조 (소관사무) ①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.

②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.

제 4 장 사 업 소

제14조 (설치)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.

제15조 (소장) 각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6조 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상수도사업소

- 가. 상수도시설 확충 및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
- 나. 수도요금, 시설분담금, 정액요금, 제수수료 등의 부과·징수
- 다. 지하수 개발 이용에 관한 사항
- 라. 상수원관리 및 상수도시설의 운영,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마. 간이상수도 및 먹는물 관련업무에 관한 사항
- 바. 취·정수, 생활·공업용수의 생산 및 송·배급수에 관한 사항
- 사. 누수방지 및 노후관 교체
- 아. 기타 부담금 등 과정업무 징수에 관한 사항

2. 환경사업소

- 가.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
- 나. 하수처리장 건설·보수 및 유지관리
- 다. 하천관리 및 공공하수도 시설 유지관리
- 라.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에 관한 사항
- 마.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실험실 운영
- 바. 하수처리 방법의 연구개발
- 사. 폐기물처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 허가·신고수리에 관한 사항
- 아. 환경미화원관리 및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
- 자.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
- 차. 재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관한 사항

3. 기업지원센터

- 가.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
- 나. 중소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사항
- 다. 공단관련 각종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
- 라. 공단 건축민원 및 지방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
- 마. 공단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
- 바. 기타 공단관련 기업지원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

4. 관산도서관

- 가. 도서자료의 선정구입, 수집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
- 나. 도서관 자료의 보관 및 열람
- 다. 도서관 및 독서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
- 라. 도서권장사업 및 강연회, 전시회, 각종 문학강좌 등 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도서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5. 차량등록사업소

- 가.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
- 나. 자동차 및 건설기계 책임보험·저당권에 관한 사항
- 다.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
- 라. 자동차등록번호부여에 관한 사항
- 마. 자동차등록원부 및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
- 바. 기타 차량등록민원에 관한 사항

6.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

- 가.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 관한 사항
- 나.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
- 다. 도매시장 유통종사자 지도·감독
- 라. 기타 도매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
7. 여성복지회관

- 가.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교육
- 나. 건전한 정서문화 함양을 위한 취미교육
- 다. 여성의 사회활동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

- 라. 신상 및 생활고충상담
- 마. 근로청소년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교육
- 바. 근로청소년 복지시설 및 취미교육 운영
- 사. 기타 여성 및 근로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

8.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

- 가. 시민의 문화생활,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사항
- 나. 시민의 정서함양, 교양강좌 등 건전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
- 다.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체육,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
- 라. 경기시설 및 문화시설의 사용허가 및 입장권 판매에 관한 사항
- 마. 기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

9.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

- 가. 사할린영주 귀국자의 복지시책 지원에 관한 사항
- 나. 사할린영주 귀국자 영구임대아파트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사할린영주 귀국자 방문보건 및 의료지원
- 라. 사할린영주 귀국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민원봉사센터 운영
- 마. 기타 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에 관한 사항

10. 농업기술보급소

- 가. 농촌발전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
- 나. 식량증산 시책과 영농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
- 다.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에 관한 사항
- 라. 토양검정 및 보호에 관한 사항
- 마.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

제 5 장 출 장 소

제17조 (설치) ①법 제10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부출장소(이하 이 장에서 "출장소"라 한다)를 둔다.
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3과 같다.

제18조 (소장)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, 대부출장소장이 대부동장을 겸한다.

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9조 (소관사무) 출장소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및 대부동사무소 일반 사무를 관장한다.

제 6 장 하부행정기관

제 1 절 자치구가 아닌 구

제20조 (설치)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 (이하 "구"라 한다)를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21조 (구청장)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구에 구청장을 둔다.

②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과 동장을 지휘·감독 한다.

제 2 절 동

제22조 (설치)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·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을 둔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사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.

제23조 (직무) 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, 민원 서류발급업무, 통·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.

제24조 (동장) 동에는 동장을 두며, 동장은 시장과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한시기구에 대한 규정)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자치과 및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02.12.31일까지로 한다.

제3조 (다른 조례의 개정) ①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2항중 "기획실장"을

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제6조제2항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②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2조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③안산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제1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“연구평가팀장”을 “투자분석팀장”으로 한다.

④안산시지방재정투·융자사업심사조례 제5조제3항, 제6조제2항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⑤안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2조제3항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⑥안산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 제8조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제12조제1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고 “예술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⑦안산시문화예술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제11조제2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“예술담당”을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하고, 제14조제1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제2항중 “예술담당”을 ‘업무담당주사’로 한다.

⑧안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⑨안산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관리조례 제5조제3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동조제5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하며, 제10조제1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한다.

⑩안산시청직장운동부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2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⑪안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제9조제3항중 “정보화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⑫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6조제4항중 “기획실장, 도시계획국장, 건설교통국장, 행정지원국장”을 “시본청 국장”으로 한다.

⑬안산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 제5조제3항중 “기획실장, 업무담당국장, 행정

지원국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경제국장, 복지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⑭ 안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항중 “복지사업팀장”을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⑮ 안산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제5조제2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⑯ 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제6조제4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“도시계획국장”을 “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하며, 제6조제5항중 “환경보호과장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⑰ 안산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9조제3항중 “기획실장, 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경제국장”으로 한다.

⑯ 안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중 “자치홍보담당관”을 “공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⑯ 안산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중 “월피동”앞에 “상록구”를 삽입한다.

⑯ 안산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중 “동장(사1동장·와동장을 제외한다)”를 “구청장”으로 하고, 제6조제3항중 “(사1동장·와동장)”을 삭제한다.

⑯ 안산시시세조례 제6조제1항중 “동장”을 “구청장·동장”으로 하고, 제14조제1항 중 “지방세심의위원회”앞에 “시본청에”를 삽입하며, 제14조제2항중 “과세표준심의위원회”앞에 “시본청에”를 삽입한다.

⑯ 안산시노동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제3조중 “성곡동”앞에 “단원구”를 삽입한다.

⑯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제2조의 위치란 “이동”앞에 “상록구”를 삽입한다.

⑯ 안산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 제2조중 “고잔동”앞에 “단원구”를 삽입한다.

⑯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 제2조중 “선부동”앞에 “단원구”를 삽입한다.

⑯ 안산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 및 “문화체육담당관실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과 “담당과”로 한다.

⑯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 제7조제2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 및 “문화업무담당주사”를 “업무담당과장”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- ㉙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10조제2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- ㉚ 안산시문화상조례 제4조중 “시장 또는 동장”을 “시장 또는 구청장 · 동장”으로 한다.
- ㉛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 제2조제1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고, 제11조제3항중 “기획실장”을 “업무담당국장”으로 하며, 동조 제5항중 “문화체육담당관” 및 “예술업무담당주사”를 각각 “업무담당과장”과 “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- ㉜ 안산시성호기념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중 “이동”앞에 “상록구”를 삽입한다.

소관 실 · 과		총 무 과
입 안 자	실 · 과장 직위 · 성명	총무과장 이 범 구
	담당 · 팀장 직위 · 성명	구청설치상황실장 박 미 라
	담당자 성명 · 전화	허 진 (행정 3565)

〈별표1〉

시 본청·소속기관·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(제4조 관련)

기 관 명	소 재 지
안산시청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번지
보건소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번지
대부출장소	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7번지
상수도사업소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-2번지
안산정수장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산6번지
연성정수장	시흥시 광석동 산9-2번지
환경사업소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7-5번지
환경사업소 하수처리장	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21번지
기업지원센터	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773-2번지
관산도서관	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산31번지
성포도서관 분관	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산47-1번지
감골도서관 분관	안산시 상록구 사동 산83-8번지
차량등록사업소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-10번지
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	안산시 상록구 이동 528번지
여성복지회관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5번지
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04번지
사할린영주귀국동포지원사업소	안산시 상록구 사동 1534번지
농업기술보급소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5번지
상록구	상록구청
	일 동
	사 1 동
	안산시 상록구 사동 1584번지
	안산시 상록구 일동 110-5번지
	안산시 상록구 사동 1304번지

기 관 명		소재지
상록구	사 2 동	안산시 상록구 사동 1344-5번지
	본 오 1 동	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20번지
	본 오 2 동	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796-4번지
	본 오 3 동	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3번지
	부 곡 동	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671-4번지
	월 피 동	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719-4번지
	성 포 동	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199-1번지
	반 월 동	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643-4번지
	안 산 동	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441-9번지
	단 원 구 청	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66-2번지
단원구	와 동	안산시 단원구 와동 111-4번지
	고 잔 1 동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59-6번지
	고 잔 2 동	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72-3번지
	원 곡 본 동	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6-6번지
	원 곡 1 동	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821-1번지
	원 곡 2 동	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6번지
	초 지 동	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6-1번지
	선 부 1 동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64-4번지
	선 부 2 동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97-2번지
	선 부 3 동	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135번지
대 부 동		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467번지

〈별표 2〉

보건소의 명칭 및 관할구역(제11조제3항 관련)

명 칭	관 할 구 역	비 고
보건소	안산시 일원	
대부보건지소	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	
대부남동보건진료소	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일원	

〈별표 3〉

출장소의 관할구역(제17조제2항 관련)

명 칭	관 할 구 역	비 고
대부출장소	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일원	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 안 번 호	1056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02. 9. 13.
제 안 자 : 의회 · 행정위원장

1. 수 정 이 유

- 조례안 중 일부 행정기구의 명칭을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함.

2. 주 요 골 자

- 안 제6조의 “도시건설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 수정함.
- 안 제10조의 제목 “(도시건설국에 두는 과)”를 “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”로, 동조 제1항 중 “도시건설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, 동조 제2항 중 “도시건설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각각 수정함.
- 안 제16조의 제1호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“상수도사업특별 회계운영”을 삽입함.
- 부칙 제3조 제16항의 “도시건설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수정함.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6조 중 “도시건설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 제목 “(도시건설국에 두는 과)”를 “(건설교통국에 두는 과)”로 하고, 동조 제1항 중 “도시건설국”을 “건설교통국”으로 하며, 동조 제2항 중 “도시건설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제16조제1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

부칙 제3조제16항 중 “도시건설국장”을 “건설교통국장”으로 한다.

조문대비표

원 안	수정안
<p>제6조(국의 설치)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, 기획경제국, 복지환경국, <u>도시건설국</u>을 둔다.</p> <p>제10조(<u>도시건설국에 두는 과</u>) ①<u>도시건설국</u>에 도시과, 건설과, 건축과, 허가과, 교통행정과를 둔다. ②<u>도시건설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18.(생략)</p> <p>제16조(소관사무)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상수도사업소 가.~아.(생략) 자.(신설)</p>	<p>제6조(국의 설치)<u>건설교통국</u>.....</p> <p>제10조(<u>건설교통국에 두는 과</u>) ①<u>건설교통국</u>..... ②<u>건설교통국장</u>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~18.(원안과 같음)</p> <p>제16조(소관사무)..... 1. 상수도사업소 가.~아.(원안과 같음) 자.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</p>
부 칙	부 칙
<p>제1조(시행일) (생략) 제2조(한시기구에 대한 규정) (생략)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⑯(생략) ⑯<u>안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 조례</u> 제6조제4항 중 “기획실장”을 “기획 경제국장”으로 하고, “도시계획국장”을 “<u>도시건설국장</u>”으로 하며, 제6조제5항 중 “환경보호과장”을 “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 ⑰~⑳(생략)</p>	<p>제1조(시행일) (원안과 같음) 제2조(한시기구에 대한 규정) (원안과 같음)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~⑯(원안과 같음) ⑯..... <u>건설교통국장</u>..... ⑰~⑳(원안과 같음)</p>